

○ 소요재원 : 300억원 (담 사용권자 : 90%, 지자체 : 10%)

○ 사업시행수립권자 : 충청도지사

12. 기타 담 건설(보 건설)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(변경없음)

○ 보상물건 조서 및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사업단(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, 전화번호 : 043-870-4231)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.

● **환경부고시제2020-204호**

「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(환경부고시 제2018-201호, '18.12.7)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7일

환 경 부 장 관

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
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본문 중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9조의2”를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4조”로, “아니하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5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4항”을 “제6항”으로, “법 제41조 제1항의 제3호”를 “법 제41조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해당하여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이 위해관리계획서에 작성해야할 내용 중 규칙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작성·제출할 수 있다.

1.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규칙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(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) 2부와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

2. 사업자가 규칙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(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)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(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) 및 변경사항이 없다는 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·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

⑤ 제4항에 따라 제외하고 작성·제출할 수 있는 같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과 위해관리계획서에 제출해야할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에만 한정하여 제외하고 작성·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제2장제2절에서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·제출해야 한다.

1. 제12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

2. 제13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목록,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

3. 제14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

제12조제2항 단서 중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1조”를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0조”로 한다.

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안전원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, 규칙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토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”를 “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송부·제출받은 경우, 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라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 중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및 안전성향상계획 2부 와 고용노동부장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(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)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
2. 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라 제외하고 작성·제출하려는 자가 규칙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(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)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(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) 및 변경사항이 없다는 규칙 별지 제31호의 2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·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
- ③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생략하는 같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과 위해관리계획서에 제출해야할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에만 한정하여 검토를 생략한다.

1. 제12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
2. 제13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목록,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
3. 제14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

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한다.

제31조제3항 중 “사용하여서는”을 “사용해서는”으로 한다.

제54조 중 “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”를 “「행정규제기본법」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”으로, “2018년 1월 1일”을 “2021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별지 제23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● 환경부고시제2020-205호

「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(환경부고시 제2018-7호, '18.1.11)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.

2020년 10월 7일

환 경 부 장 관

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

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0호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않는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아니한”을 각각 “않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본문 중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9조의2”를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아니하다고”를 “않다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한다.

- ④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·제출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이 장외영향평가서에 작성해야할 내용 중 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과 나목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작성·제출할 수 있다.

1.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규칙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(보고서 또는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) 2부와 해당 법률에 따라 심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